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9. 1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9월 1일

나. 제 출 자 : 김길자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9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5. 9.14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청소년독서실이 각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청소년 독서실 운영 시간 변경(안 제5조제1항)

- 오전 08시 ~ 오후 11시로 한다. → 08:00 ~ 23:00까지 하되,

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.

❍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(안 제7조제5호) : 가정위탁 아동 감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❍ 본 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낮은 독서실에 대해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가정위탁 아동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❍ 현재 관내 청소년독서실은 15개소로서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, 최근 5년간 독서실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하루 평균 이용률이 42%로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률이 4%,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하루 평균 이용률이 15%인데 반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는 실정임.

❍ 독서실의 이용률 감소 요인으로 학교 내 독서실, 구립 정보문화 도서관, 평생학습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대체시설 증가와 기존 독서실의 시설 노후화 및 부대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현 운영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독서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❍ 이를 개선하고자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시간을 현재와 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유지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에 대해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❍「아동복지법」의 보호대상인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구립 독서실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.

❍ 다만 청소년 독서실이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건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기존 이용자에 대한 불편사항과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에 대한 기능전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6

발의연월일 : 2015년 9월 1일
발 의 자 : 김길자 의원 외 6명

1. 제안이유

청소년독서실이 각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 독서실 운영 시간 변경(안 제5조제1항)

- 오전 08시 ~ 오후 11시로 한다. → 08:00 ~ 23:00까지 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.

나.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(안 제7조제5호) : 가정위탁 아동 감면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　　의 : 가정복지과, 총무과, 기획예산과

라. 입법예고(2015. 8. 25 ~ 8. 31) 결과 : 의견 반영

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오전 8시 ~ 오후 11시로 한다”를 “08:00 ~ 23:00까지 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 시간을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7조제5호 중 “가정위탁 아동”을 추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이용시간 및 사용료)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08시 ~ 오후 11시로 한다.	제5조(이용시간 및 사용료) ① ----------08:00 ~ 23:00까지 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.
제7조(사용료 감면) ----------	제7조(사용료 감면)----------
5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소년·소녀가정으로 선정된 사람	5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소년·소녀가정, **가정위탁 아동**으로 선정된 사람